#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2

발의연월일: 2021. 5. 31.

발 의 자:이종성·서일준·김상훈

이종배 • 박대수 • 정경희

정운천 · 김예지 · 김용판

김형동 · 윤한홍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 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규정과 함께 현행법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율의 85%만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동시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를 최 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를 "제20조제1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감면)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	
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	
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취득세를 <u>2022년 12월</u>	<u>2025년 12월</u>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u> 31일</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	②
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	
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	

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 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 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 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 ⑥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저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u>2025년 12월 31일</u>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u>제20</u>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 략)

	·		
		·	
1	/ 위 레 키	31 () )	
1.	(현행과	崔音)	
2.			
			عرا <u>منا</u>
			<u>A 20</u>
	조제1호.	제22조제1항	및 제2
	<u>항</u>		
		-	
2	·③ (현	행과 같음)	